

중국 反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

중소기업중앙회

■ 反간첩법이란?

-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안전기관 직무를 규정한 국가안전법을 바탕으로 2014년 反간첩법 첫 제정
- 反간첩법은 2023.4.26. 9년 만에 개정,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·강화
- 개정된 反간첩법은 2023.7.1.부 공식 시행

■ 개정 反간첩법 주요 내용

1. 간첩행위 정의

- ①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
- ② 간첩조직에 참여하는 행위,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임무를 받거나 의탁하는 행위
- ③ 국가기밀 및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·데이터·자료·물품을 절취·정탐·매수·불법 제공
- ④ 국가 정보 네트워크 공격·침입·방해·통제·파괴
- ⑤ 적을 위해 공격목표 지시
- ⑥ 기타 간첩활동 수행

2. 법 적용범위

- 중국은 물론, 중국 내에서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용대상

3. 법 집행기관 권한

- ① 혐의자 조사시 신체·물품·장소 검사 가능
- ② 신분증명 요구 및 신분 불분명시 소지품 확인 가능
- ③ 反간첩 업무 수행시 문서·데이터·자료·물품 열람 및 혐의자 재산정보 조회 권한 보유
- ④ 국가안보 위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, 간첩혐의자 출국금지 등 권한

4. 지원·협조의무

- ① 당국이 법률에 따라 정황 조사후 증거 수집시 거부 불가하며, 데이터 수집 비협조시 데이터안전법에 의거하여 처벌 가능

② 물류·통신·인터넷 업체도 당국에 지원·협조 의무

5. 처벌 강화

①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경고·행정구류·과태료 등 처분 부과 가능

②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 ❖ 출입국 불허 ❖ 추방 가능

6. 교육·홍보

① 반간첩 예방 홍보·교육 실시

② 국가기관 및 단체의 반간첩 예방조치 의무화

■ 반간첩법 처분 절차

- 반간첩법은 국가안전부 공권력 행사를 위한 행정법이며, 형법은 공안·안전부·검찰원의 범죄행위 조사·처벌 법률
- 반간첩법은 형법보다 간첩행위 규정·기관 권한이 포괄적이며, 증거 수집 등 목적으로 조사·심문 가능
- 반간첩법은 형법과 달리 범죄 미성립시에도 행정처분 가능



■ 주요 특징

1. 불심점문 허용

- 중국 안전기관원은 규정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중국인·외국인에 대해 신분증 확인 및 反간첩 정황 심문 가능
- 신원 불분명자 또는 간첩 혐의자 소지품 검사 가능
- 안전기관 내부 승인만으로 혐의자 신체·장소 수색 가능

2. 기업활동 영향

- 간첩조사를 목적으로 문건·데이터·자료·물품을 검열·수거할 수 있으며, 관련 개인·단체는 협조 의무 부과
- 간첩 혐의자에 대해 장소(근무지) 조사 가능
- 간첩행위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·시설·재물에 대해 압류·동결 등 가능

3. 포괄적 법 규정

- 간첩행위의 판단 기준인 ‘국가안전과 이익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中 당국 판단에 따라 법 적용
- 간첩행위로 기술된 ‘의탁 행위’는 혐의자가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

4. 행정처분 부과

- 사법적 판단(형법 적용)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처분(경고, 구류, 과징금, 강제추방 등)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
- 反간첩법 사건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해 피의자의 합법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

5. 제3국 대상 활동 규제

-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중국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시 간첩행위로 포함
- 중국 내에서 북한 관련 연구·취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계·언론인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항

■ 기업 유의사항

1. 중국 방문 또는 체류시

- 공개자료라도 中 당국이 중국의 국가안보와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문건, 지도, 사진, 통계 등은 스마트폰·노트북에 저장 또는 출력해 휴대하지 않도록 유의
 - * GPS어플을 켜고 등산하는 경우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형정보가 취득되어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주의
- 군사시설 등 국가 보안시설, 시위 장소 등에서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하고, 이들 시설에 접근도 가급적 자제
 - * 공항·역·항만 등은 일부가 군사관리 지역이므로 유의
- 중국인 대상 종교활동 금지 등 中 종교 관련 법령 준수
- 중국 영토, 인권, 지도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지속 표현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中 당국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 자제
- 기존 체류지(한국 등)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·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중국 내 사용 자제
- 국내 거주중인 가족이나 연고자 등에게 중국 내 행선지, 연락처 등 정보를 알려주고 비상상황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

2. 중국 당국 체포·연행시

- 反간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·조사시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관련 사실 통보
- 자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중국 당국에 同 사실을 관할 우리 공관에 알려줄 것과 영사와의 접견을 적극 요청
 - * ‘한중 영사협정’ (2014년) 의거, 중국당국은 우리국민을 구속하는 경우 4일 이내에 우리당국에 통보의무
- 중국 측이 영사접견 주선을 거부할 경우 가족을 통해 영사 접견 희망 의사를 우리 당국에 전달

3. 중국 反간첩법 적용 제한규정 활동

- 反간첩법은 △개인·조직의 합법적 권익 침해 금지 △문서·데이터 열람·수거는 업무필요 범위 내 수행 △업무중 취득 정보는 기밀 유지 등을 규정
- 反간첩법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할 우리 공관과 협조 아래 중국 당국의 우리 기업·개인의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대응

4. 기업 자료·데이터 관리

- 기업 자체적으로 현지 법인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식별 및 보호구역·접근권한 등에 대한 보호조치 확행
- 현지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중요 기술자료 관리 강화 및 중국인 직원의 기술자료 접근 권한 차등 부여

5. 산업기술 보호 관련

- 中 당국의 우리기업 국가핵심기술 보관구역 접근 및 자료 열람 요청 등 기술탈취 우려 시 「산업기술보호법」상 정부 승인 사안임을 고지 후 관할 우리 공관에 관련 사실 통보
- 反간첩법 집행 명목으로 주재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비, 현지 임직원 대상 중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민감한 자료 사적보관 등 임의 반출 금지조치 시행